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배준영 · 이종배
김정재 · 조은희 · 안상훈
이달희 · 이준석 · 김예지
이성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

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4항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 본문 중 ““세대”라 한다”를 ““세대”라 하며, 이 항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